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연락처 : 02-725-7104)

주 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피청구인 : 국회사무총장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4. 자로 청구인에게 한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 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230목)의 세부지출내역'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입니다.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피청구인 국회사무총장은 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내린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에 해당합니다.

나. 청구인의 활동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1994. 설립당시부터 의정감시센터를 설치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감시와 정치제도 개선안 제시 등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위 센터는 1998. 1. 1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이용

하여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의 운영 관련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동기

청구인은 지난 5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중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시절 원내대표로서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이른바 '국회 대책비(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갑제3호증의 1)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갑제3호증의 2)을 계기로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거부처분

청구인은 2015. 05. 14. 피청구인에게 2011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230목)의 세부지출내역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일자, 지출금액, 지급금액, 지출건명, 수령인)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 06. 08. 청구내용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회에서는 위원회운영 및 의원외교활동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갑제1호증 1, 2)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2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아래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비공개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더욱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참여연대가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2000년 9월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갑제2호증의 1 내지 3).

특히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마나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비공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5호에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에 불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이들 상임위원회 회의나 활동조차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활동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지출금액, 일시, 예산수령자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입니다.

2)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수행하고, 행정부 감시·견제와 예·결산 심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제보접수나 정보수집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활동의 경비 지출을 특수활동비에서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2000구39953)이 판결한 것과 같이, 특수활동비의 지출승인일자와 지출금액,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의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활동의 실상이 드러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표결 등 모든 활동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러한 활동의 지출된 경비 내역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 처분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회사무처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국익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할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반하여 시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국정에 참여할 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해소 될 수 있으며(갑제3호증의 3, 4),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으로써 국민들이 수궁할 만한 개선방안도 도출될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 2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답변
1.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 및 상급심
1.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각 신문기사

갑제3호증의 1 「홍준표, “국회대책費는 직책수당 성격”, 국회 “洪 발언에 해당하는 항목 없어”」 조선일보 (2015. 5. 13.)

갑제3호증의 2 「신계륜 “상임위원장 때 받은 직책비, 아들 유학자금 등 개 인용도로 썼다”」 조선일보 (2015. 5. 19.)

갑제3호증의 3 「국회 '눈먼 돈' 특수활동비... 의원 개인적 유용에도 무방비」
한국일보 (2015. 5. 20.)

갑제3호증의 4 「국회는 상습적인 公金 횡령 집단인가」 조선일보 사설 (2015.
5.20.)

2015 . 6. 23.

청구인 박근용 (서명 또는 인)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